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2. 12.18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-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가 2002.12.31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완전한 마무리와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 운영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 1년 6개월 연장
  - ▷ 총무국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: 2002년 12월 31일 ⇒ 2004년 6월 30일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
- 기타 :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 지침(자치 13101-22565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531호(2001.6.30)부칙 제2조 제1항중 “2002.12.31”을 “2004.6.30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부칙&lt;2001.6.30.조례제531호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(생략)</p> <p>제2조(한시기구)①제5조제1항의 주민 자치과 존속기한은 <u>2002.12.30</u>일까지로 한다</p> <p>②(생략)</p>	<p>부칙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한시기구)①----- -----<u>2004.6.30</u>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